

보육교사 부담 늘어 질 저하 불보듯

어린이집 재정 확보에 긍정적인 면도

지난달 보사부가 입법예고,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일선 보육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보사부는 기존 영유아보육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규칙안은 기존시설의 아동보육 능력 증가, 시설설치 및 운영비 경감을 위해 시설면적을 영유아 1인당 1.3평에서 1.1평으로, 보육실의 경우 3세 미만 영아는 현

유아는 0.8평에서 0.6평으로 조정했다.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를 2세 미만 영아는 7인에서 5인으로 강화하고 3세 이상 유아는 15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한 것.

이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에서는 더 많은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게 됐고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최연숙, 이하 지탁연)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찬반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3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3세 이

해서는 찬성이지만 20명당 1인으로 묶어 놓은 것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선주(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씨는 “내가 일하고 있는 29평 규모의 어린이집 법정정원이 현재 29명인데 앞으로 38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어린이 20명을 혼자서 하루 종일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에게 장시간의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어린이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씨는 “내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의 월급을 쪼개 한 분을 더 두고 아이들 29명을 선생님 넷이 돌보고 있다. 그럼에도 손길이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인다.

지탁연의 한 관계자는 “영아와 2~3세, 4~5세, 5세 이상으로 구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져 3세 이하와 3세 이상의 두단계로 됐다”며 평당 어린이 수는 개정 전이 더 합당 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보사부 아동복지과 오게선 씨는 “앞으로 3년

5백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시행 여부에 대해 처벌을 하는 등 강경하게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사업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5천2백39개의 탁아소 하나하나를 모두 신경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은 많은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 시설장 자격 인정을 위한 심의 및 승인 권한이 보건사회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었고 신규설치인가 서류를 10종에서 6종으로, 가정보육시설 비치장부를 13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감축해 각종 신청서에 날인 대신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이 쉬워진 것으로 사시이다.